

**1** **재가돌봄·가사 서비스 (【500101】 기본A형), (【500301】 기본C형)**  
**일상돌봄 가사 서비스 (【500801】 기본B형)**

구 분	내 용						
시행 시군	• 전 시군						
사업목적	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의 가구 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부담 및 기본 생활환경 유지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감,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						
신청자	① 돌봄 필요 청·중장년(만13세~만64세), ② 가족돌봄청년(만9~39세 이하)						
서비스 대상자	① 돌봄 필요 청·중장년 신청자 ②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필요 가족						
내용 및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비스 내용 :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·가사 서비스의 제공</li> <li>① (재가돌봄) 목욕 등 신체청결,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</li> <li>② (가사) 청소, 설거지,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청소</td> <td>청소(가구내 방, 거실, 및 주방, 화장실 한정) 및 설거지,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</td> </tr> <tr> <td>세탁</td> <td>세탁 및 세탁물 수거(다림질 제외)</td> </tr> <tr> <td>식사준비</td> <td>식재료 준비와 설거지,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(장보기 제외)</td> </tr> </table> </li> <li>③ (일상지원) 장보기,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</li> </ul> <p>※ 서비스 A형, C형의 경우 ①~③ 서비스를, 서비스 B형의 경우 ②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임</p>	청소	청소(가구내 방, 거실, 및 주방, 화장실 한정) 및 설거지,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	세탁	세탁 및 세탁물 수거(다림질 제외)	식사준비	식재료 준비와 설거지,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(장보기 제외)
청소	청소(가구내 방, 거실, 및 주방, 화장실 한정) 및 설거지,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						
세탁	세탁 및 세탁물 수거(다림질 제외)						
식사준비	식재료 준비와 설거지,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(장보기 제외)						
제공기간	• 1년 (재판정 2회, 최대 3년까지 가능) * '25년 선정 이용자는 6개월 유지 '26년부터 1년적용						
제공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(지정·등록제)</li> <li>※ 「사회서비스이용권법」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「재가방문서비스」 요건 충족 필요</li> <li>• (대표자 및 관리자)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복지사, 또는 의료인,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</li> <li>-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</li> <li>- 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재가방문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, 가사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관의 장은 「가사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」가 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						
제공인력 자격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공인력 등록기준 10명 이상(단, 군지역은 3명 이상)</li> <li>가) (돌봄 서비스_기본 A형, C형)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</li> <li>②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</li> </ol> </li> <li>나) (가사 서비스_기본 B형)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, 가사관리전문가, 홈매니저,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②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③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한 자</li> <li>④ 상기 '가) 돌봄서비스' 제공 가능인력</li> </ol> </li> </ul>						

가격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비스 유형별 단가(2026년 1월1일부터 적용)</li> <li>※ 2025년 이용자도 2026년도 가격 적용</li> </ul>				
	서비스 유형	서비스가격(월)	소득수준별 금액		
			소득수준	본인부담금	정부지원금
	돌봄-가사 월 36시간 (A형)	684,000원	수급자, 차상위	면제	684,000원
			120% 이하	(10%) 68,400원	615,600원
			120~160%	(25%) 171,000원	513,000원
			160% 초과	(100%) 684,000원	0원
	돌봄-가사 월 72시간 (C형)	1,368,000원	수급자, 차상위	면제	1,368,000원
			120% 이하	(10%) 136,800원	1,231,200원
			120~160%	(25%) 342,000원	1,026,000원
160% 초과			(100%) 1,368,000원	0원	
가사만 월 24시간만 (B형)	444,000원	수급자, 차상위	면제	444,000원	
		120% 이하	(10%) 44,400원	399,600원	
		120~160%	(25%) 111,000원	333,000원	
		160% 초과	(100%) 444,000원	0원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야간·휴일 및 고난도 사례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가산 적용 가능하며, 가산률 서비스 가격의 60%</li> <li>※ A·C형 시간당 19,000원, B형 시간당 18,500원</li> <li>※ 본인부담 경감필요 가족돌봄 청(소)년 본인부담률 5%p 할인('26.3월 부터)</li> </ul>					
제공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비스 제공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단계 : 등록·개인욕구 파악</li> <li>- 2단계 : 욕구 반영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(효과성 척도 사전검사 실시)</li> <li>- 3단계 : 제공계획에 기반한 서비스 실시</li> <li>- 4단계 : 서비스 모니터링</li> <li>- 5단계 : 종료상담(효과성 척도 사후검사 실시)</li> </ul> </li> </ul>				
안전관리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안전관리 계획수립(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)</li> <li>제공인력(연 2회)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</li> <li>(재가방문형 보험가입) 전문인력배상책임보험,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</li> </ul>				
기타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전·사후 검사 : ① 사전검사 : 서비스 시작 전 실시, ② 사후검사 : 종료 월 실시</li> <li>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·보고 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삶의 질 척도 사전·사후 검사 대비 10% 향상</li> </ul> </li> <li>제공방식 : 재가방문형</li> <li>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, 장소, 주요 내용, 제공인력, 이용자 서명, 특이사항 등을 기록</li> </ul> </li> </ul>				

## ② 식사영양관리 서비스(영양관리 【500401】)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											
시행 시군	• 전 시군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목적	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·중장년 가구,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자	① 돌봄 필요 청·중장년(만13세~만64세), ② 가족돌봄청년(만9~39세 이하)																								
서비스 대상자	① 돌봄 필요 청·중장년 신청자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 필요 가족																								
내용 및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식사관리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반찬, 도시락, 완전조리식품 등 배달</li> </ul> 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80%;">일반식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월 8회 (주1~2회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-회당 3식 이상, 1식 4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)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필요한 경우 식단 구성 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등 참고(일부 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공개 중)</li> <li>- 식사 배달 시 ①이용자의 주거 및 건강상태 등 안부 확인(이용자의 급격한 건강 악화 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시 119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연락), ②이전 식사 제공분 섭취여부 및 식단 만족도 확인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영양관리형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65%;">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주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전검사</td> <td>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, 건강상태를 파악 ※ 식약처의 영양지수(NQ),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 등 참고</td> <td>초기 1회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식사 지원</td> <td>반찬, 도시락 배달, 완전조리식품 배달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월 8회 (주1~2회)</td> </tr> <tr> <td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일반식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치료식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저작 및 연하도음식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-회당 3식 이상, 1식 4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)</td> <td>-회당 3식 이상, 1식 4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)</td> <td>-회당 3식 이상, 1식 3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, 영양보충식 등 고려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td> </tr> <tr> <td>영양관리</td> <td>이용자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제공 ※ ①유인물 제공, ②주기적 상담(문자, 메일, SNS, 전화, 대면 등), ③필요시 집합교육 등 실시 ※ 대면 방식(대면 상담, 집합교육)은 월 1회 이상, 비대면 방식(문자, 유인물, SNS 등)은 주 1~3회</td> <td>필요시 수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영양관리 관련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온통,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등 참고</li> <li>- 식사 배달 시 ①이용자의 주거 및 건강상태 등 안부 확인(이용자의 급격한 건강 악화 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시 119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연락), ②이전 식사 제공분 섭취여부 및 식단 만족도 확인</li> </ul>		일반식	월 8회 (주1~2회)	-회당 3식 이상, 1식 4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)		구분	내용	주기	사전검사	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, 건강상태를 파악 ※ 식약처의 영양지수(NQ),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 등 참고	초기 1회	식사 지원	반찬, 도시락 배달, 완전조리식품 배달	월 8회 (주1~2회)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일반식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치료식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저작 및 연하도음식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-회당 3식 이상, 1식 4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)</td> <td>-회당 3식 이상, 1식 4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)</td> <td>-회당 3식 이상, 1식 3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, 영양보충식 등 고려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일반식	치료식	저작 및 연하도음식	-회당 3식 이상, 1식 4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)	-회당 3식 이상, 1식 4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)	-회당 3식 이상, 1식 3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, 영양보충식 등 고려)	영양관리	이용자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제공 ※ ①유인물 제공, ②주기적 상담(문자, 메일, SNS, 전화, 대면 등), ③필요시 집합교육 등 실시 ※ 대면 방식(대면 상담, 집합교육)은 월 1회 이상, 비대면 방식(문자, 유인물, SNS 등)은 주 1~3회	필요시 수시
	일반식	월 8회 (주1~2회)																							
	-회당 3식 이상, 1식 4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)																								
	구분	내용	주기																						
사전검사	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, 건강상태를 파악 ※ 식약처의 영양지수(NQ),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 등 참고	초기 1회																							
식사 지원	반찬, 도시락 배달, 완전조리식품 배달	월 8회 (주1~2회)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일반식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치료식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저작 및 연하도음식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-회당 3식 이상, 1식 4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)</td> <td>-회당 3식 이상, 1식 4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)</td> <td>-회당 3식 이상, 1식 3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, 영양보충식 등 고려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일반식	치료식	저작 및 연하도음식	-회당 3식 이상, 1식 4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)	-회당 3식 이상, 1식 4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)	-회당 3식 이상, 1식 3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, 영양보충식 등 고려)																	
일반식	치료식	저작 및 연하도음식																							
-회당 3식 이상, 1식 4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)	-회당 3식 이상, 1식 4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)	-회당 3식 이상, 1식 3찬 이상 -회당 간식 포함(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, 영양보충식 등 고려)																							
영양관리	이용자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제공 ※ ①유인물 제공, ②주기적 상담(문자, 메일, SNS, 전화, 대면 등), ③필요시 집합교육 등 실시 ※ 대면 방식(대면 상담, 집합교육)은 월 1회 이상, 비대면 방식(문자, 유인물, SNS 등)은 주 1~3회	필요시 수시																							
제공기간	• 1년 (재판정 2회, 최대 3년까지 가능) * '25년 선정 이용자는 6개월 유지 '26년부터 1년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
제공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(지정·등록제)</li> <li>①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 중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*</li> <li>②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기관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대표자 및 관리자)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복지사, 또는 의료인,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</li> <li>-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공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식사관리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, 임상영양사</li> <li>- 식품학, 영양학,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</li> <li>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</li> </ul> </li> <li>-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</li> <li>-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- 「식품위생법」 제53조에 따른 조리사,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·조리산업기사·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</li> <li>- 배달 한정 운전면허증 소지자 허용</li> </ul> </li> <li>● (영양관리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필수인력)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, 임상영양사</li> <li>※ 단, 사업초기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'25년까지는 영양사 등 필수인력이 없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('26년에는 반드시 채용)</li> <li>- (그 외 제공인력)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식품학, 영양학, 식품영양학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</li> <li>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</li> </ul> </li> <li>· 요양보호사, 또는 사회복지사</li> <li>·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· 「식품위생법」 제53조에 따른 조리사,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·조리산업기사·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</li> <li>· 배달 한정 운전면허증 소지자 허용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격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서비스 가격</li> <li>※ 본인부담 경감필요 가족돌봄 청(소)년 본인부담률 5%p 할인('26.3월 부터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84 1406 1465 1832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유형</th> <th rowspan="2">서비스가격 (월)</th> <th colspan="3">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</th> </tr> <tr> <th>소득수준</th> <th>본인부담금</th> <th>정부지원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식사관리</td> <td rowspan="4">228,000원</td> <td>수급자, 차상위</td> <td>(5%) 11,400원</td> <td>216,600원</td> </tr> <tr> <td>120% 이하</td> <td>(15%) 34,200원</td> <td>193,800원</td> </tr> <tr> <td>120~160%</td> <td>(30%) 68,400원</td> <td>159,600원</td> </tr> <tr> <td>160% 초과</td> <td>(100%) 228,000원</td> <td>0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영양관리</td> <td rowspan="4">260,000원</td> <td>수급자, 차상위</td> <td>(5%) 13,000원</td> <td>247,000원</td> </tr> <tr> <td>120% 이하</td> <td>(15%) 39,000원</td> <td>221,000원</td> </tr> <tr> <td>120~160%</td> <td>(30%) 78,000원</td> <td>182,000원</td> </tr> <tr> <td>160% 초과</td> <td>(100%) 260,000원</td> <td>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유형	서비스가격 (월)	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			소득수준	본인부담금	정부지원금	식사관리	228,000원	수급자, 차상위	(5%) 11,400원	216,600원	120% 이하	(15%) 34,200원	193,800원	120~160%	(30%) 68,400원	159,600원	160% 초과	(100%) 228,000원	0원	영양관리	260,000원	수급자, 차상위	(5%) 13,000원	247,000원	120% 이하	(15%) 39,000원	221,000원	120~160%	(30%) 78,000원	182,000원	160% 초과	(100%) 260,000원	0원
유형	서비스가격 (월)			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소득수준	본인부담금	정부지원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식사관리	228,000원	수급자, 차상위	(5%) 11,400원	216,6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20% 이하	(15%) 34,200원	193,8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20~160%	(30%) 68,400원	159,6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60% 초과	(100%) 228,000원	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양관리	260,000원	수급자, 차상위	(5%) 13,000원	247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20% 이하	(15%) 39,000원	22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20~160%	(30%) 78,000원	182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60% 초과	(100%) 260,000원	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공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서비스 제공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단계 : 등록·개인욕구 파악</li> <li>- 2단계 : 욕구 반영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 (※ 영양관리형의 경우 효과성 척도 사전검사 실시)</li> <li>- 3단계 : 제공계획에 기반한 서비스 실시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단계 : 서비스 모니터링</li> <li>- 5단계 : 종료상담(※ 영양관리형의 경우 효과성 척도 사후검사 실시)</li> </ul>
안전관리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안전관리 계획수립(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)</li> <li>• 제공인력(연 2회)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</li> <li>• (재가방문형 보험가입) 전문인력배상책임보험,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</li> </ul>
기타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전·사후 검사 : ① 사전검사 : 서비스 시작 전 실시, ② 사후검사 : 종료 월 실시</li> <li>•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·보고 의무 * 영양관리형만 해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성인영양지수(NQ) '상'등급(75~100%)</li> </ul> </li> <li>• 제공방식 : 재가방문형</li> <li>• 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, 장소, 주요 내용, 제공인력, 이용자 서명, 특이사항 등을 기록</li> </ul> </li> <li>•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사전검사) 건강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유의(사전검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 수집)</li> <li>- (식단) 식품군(곡류, 고기·생선·계란·콩류, 채소류 등) 및 영양소가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식단 구성</li> <li>- (조리) 가급적 나트륨, 당류, 포화지방을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리, 다양한 조리법 사용</li> <li>- (위생) ① 소비기한(유통기한) 엄격 준수, ② 재료 보관 및 조리, 배달 과정에서 위생 철저히 점검</li> <li>③ 품질관리 및 위생사고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보존식 관리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(보존식 관리 방법) ①모든 음식을 1인 분량씩(150g권장, 완제품은 그대로 보관) 전용용기나 멸균팩에 독립 보관, ②보관 시 보존식 기록표 작성하여 부착(채취자 성명, 채취일, 메뉴, 폐기일 등), ③-18℃ 이하에서 144시간(6일) 이상 보관(식생활안전관리원 보존식 보관방법 참고)</li> </ul> </li> <li>- (배송) ① 배송 시 서비스 이용자에게 소비기한, 보관방법 등 안내, ② 신선도 유지를 위한 조치(보냉백, 냉매 사용 등)</li> </ul> </li> </ul>

### 3 【500501】 병원 동행 서비스

구분	내용			
시행 시군	• 전 시군			
사업목적	거동이 불편한 청·중장년,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, 병원 수납 등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			
신청자	① 돌봄 필요 청·중장년(만13세~만64세), ② 가족돌봄청년(만9~39세 이하)			
서비스 대상자	① 돌봄 필요 청·중장년 신청자 ②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필요 가족			
내용 및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월 최대 16시간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, 집으로 귀가 시까지 동행 지원 (door to door)</li> <li>- 병원 내 접수·수납, 진료 동행, 입·퇴원 지원, 투약 및 질환 관련 정보 전달</li> <li>-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</li> </ul> </li> <li>※ ① (이동 주의사항) 차량은 별도 제공하지 않고,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</li> <li>② (서비스 이용 시간) 서비스 제공시간은 평일기준 07:00~20:00, 주말 09:00~18:00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단, 주말 이용 가능 여부는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</li> </ul> </li> <li>③ (제공인력 매칭) 동행 제공인력은 이용자 성별에 따른 동성 매칭을 권장 (의무성X)</li> </ul>			
제공기간	• 1년 (재판정 2회, 최대 3년까지 가능) * '25년 선정 이용자는 6개월 유지 '26년부터 1년적용			
제공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(지정·등록제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「사회서비스이용권법」 시행규칙 별표 1의2 '활동보조서비스' 요건 충족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• (대표자 및 관리자)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복지사, 또는 의료인,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</li> <li>-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</li> </ul> </li> <li>* 유사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기관, 장애인활동지원기관, 사회복지관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, 「협동조합기본법」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기관 참여 권장</li> </ul>			
제공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, 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, 생활지원사</li> <li>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, 간호조무사 등 수발·보호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</li> </ul> </li> </ul>			
가격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서비스 가격: 시간당 1.7만원(인력 1인 기준) / 월27.2만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5분 이상 60분 미만 제공 시 1시간으로 산정(1.7만원)</li> <li>- 15분 이상 45분 미만 제공 시 30분으로 산정(8.5백원)</li> </ul> </li> <li>※ 본인부담 경감필요 가족돌봄 청(소)년 본인부담률 5%p 할인('26.3월 부터)</li> </ul>			
	서비스가격(월)	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		
		소득수준	본인부담금	정부지원금
		수급자, 차상위	(5%) 13,600원	258,400원
		120% 이하	(15%) 40,800원	231,200원
272,000원 (시간당 1.7만원)	120~160%	(30%) 81,600원	190,400원	
	160% 초과	(100%) 272,000원	0원	
※ 필요시 제공인력 2명 이상 배치 가능 (단, 투입 인력만큼 시간당 단가 추가 적용) → 전북자치도 미해당				

<b>제공절차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서비스 제공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단계 : 등록·개인욕구 파악</li> <li>- 2단계 : 욕구 반영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(효과성 척도 사전검사 실시)</li> <li>- 3단계 : 제공계획에 기반한 서비스 실시</li> <li>- 4단계 : 서비스 모니터링</li> <li>- 5단계 : 종료상담(효과성 척도 사후검사 실시)</li> </ul> </li> </ul>
<b>안전관리 기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안전관리 계획수립(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)</li> <li>● 제공인력(연 2회)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</li> <li>● (재가방문형 보험가입) 전문인력배상책임보험,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</li> </ul>
<b>기타 유의사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전·사후 검사 : ① 사전검사 : 서비스 시작 전 실시, ② 사후검사 : 종료 월 실시</li> <li>●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·보고 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삶의 질 척도 사전·사후 검사 대비 10% 향상</li> </ul> </li> <li>● 제공방식 : 재가방문형</li> <li>● 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, 장소, 주요 내용, 제공인력, 이용자 서명, 특이사항 등을 기록</li> </ul> </li> </ul>

#### 4 【500601】 심리 지원 서비스

구분	내용			
시행 시군	• 전 시군			
사업목적	심리·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청·중장년,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			
신청자	① 돌봄 필요 청·중장년(만13세~만64세), ② 가족돌봄청년(만9~39세 이하)			
서비스 대상자	① 돌봄 필요 청·중장년 신청자 ② 가족돌봄청년 신청자 (신청자의 돌봄 필요 가족은 미해당)			
내용 및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월 4회(주 1회) 개인 상담, 월 1회 집단상담(선택)</li> <li>* 중복이용 제한 :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(행복이음 확인)</li> </ul>			
	종류	내용	시간	횟수
	사전·사후 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,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(BDI등 검사도구 활용)</li> </ul>	회당 90분	사전·사후 각 1회
	서비스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심리·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</li> <li>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</li> </ul> </li> <li>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집단상담(선택)</li> </ul>	회당 50분 회당 100분	월 4회(주 1회) 월 1회(선택)
제공기간	• 1년 (재판정 2회, 최대 3년까지 가능) * '25년 선정 이용자는 6개월 유지 '26년부터 1년적용			
제공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(지정·등록제)</li> <li>* '사회서비스이용권법'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'지원상담서비스' 요건 충족 필요</li> <li>• (대표자 및 관리자)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복지사, 또는 의료인,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</li> <li>-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</li> </ul> </li> </ul>			
제공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)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</li> <li>나)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</li> <li>다) 임상심리사</li> <li>라) 심리·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</li> <li>②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</li> </ul> </li> <li>마) 청소년상담사 (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만 가능)</li> </ul> </li> </ul>			
가격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서비스 가격</li> <li>* 본인부담 경감필요 가족돌봄 청(소)년 본인부담률 5%p 할인('26.3월 부터)</li> </ul>			
	서비스가격(월)	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		
		소득수준	본인부담금	정부지원금
	240,000원	수급자, 차상위	(5%) 12,000원	228,000원
		120%이하	(15%) 36,000원	204,000원
120~160%		(30%) 72,000원	168,000원	
160%초과		(100%) 240,000원	0원	



<b>제공절차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서비스 제공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단계 : 등록·개인욕구 파악</li> <li>- 2단계 : 욕구 반영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(효과성 척도 사전검사 실시)</li> <li>- 3단계 : 제공계획에 기반한 서비스 실시</li> <li>- 4단계 : 서비스 모니터링</li> <li>- 5단계 : 종료상담(효과성 척도 사후검사 실시)</li> </ul> </li> </ul>
<b>안전관리 기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안전관리 계획수립(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)</li> <li>● 제공인력(연 2회)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</li> <li>● 보험가입 : (기관방문형) 기관 화재보험, 이용자배상책임보험,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</li> <li>●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</li> </ul>
<b>기타 유의사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전·사후 검사 : ① 사전검사 : 서비스 시작 전 실시, ② 사후검사 : 종료 월 실시</li> <li>●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·보고 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MMPI-2(MMPI-2RF가능), BDI, STAIi, PTSD 척도 중 택1, 사전·사후 대비 10% 향상</li> </ul> </li> <li>● 제공방식 : 기관방문형</li> <li>●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, 장소, 주요 내용, 제공인력, 이용자 서명, 특이사항 등을 기록</li> </ul> </li> </ul>

**5 【510113】 중장년건강생활지원 서비스**

구 분	내 용			
시행 시군	● 전 시군			
사업목적	● 돌봄필요 중장년 개인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및 신체능력 향상 도모			
신청자 서비스 대상자	● 소득 및 연령기준 : 소득기준 없음, 만 40세~만 64세			
	● 욕구기준 1. 서비스이용을 원하는 중장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			
	욕구기준(이하 항목 중 택 1)		제출서류	
	- 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나 돌봄자가 부재한 경우		- 돌봄 필요 증빙 서류	
	- BMI가 23kg/m <sup>2</sup> 이상이거나 18.5kg/m <sup>2</sup> 미만인 경우		<이하 항목 중 택 1> ①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② 인바디 측정지	
- 허리둘레가 남자 90cm,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		- 허리둘레 확인 가능한 측정지		
-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자(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 중 하나)		-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진료확인서, 처방전 등 진단코드가 확인되는 서류 가능)		
● 우선순위 1. 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,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자립이 어려우며(고립운동 포함)돌봄자가 부재한 경우 2. 공공 또는 민간 전달체계 추천자 3. 1인 가구				
내용 및 구성	● 서비스 내용 : 월 8회, 주 2회 - 건강상태 점검,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			
	구 분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회당 시간
	기본 서비스	·건강상태 점검 - 건강상담 :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,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(인바디검사 등)	연 3회	60분
		·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- 노인 개인별 체력적 특성 및 질환에 따라 부위별(어깨, 허리, 무릎 등) 질환예방 운동 및 근력강화 운동, 낙상예방 운동 등 맞춤형 근골격 운동 프로그램 제공	주 2회 월 8회	
부가 서비스	수퍼바이저에 의한 개인별 운동방법 및 효과 점검	연2회 상하반기		
제공기간	● 1년 (재관정 1회, 최대 2년까지 가능) * '25년 선정 이용자는 6개월 유지 '26년부터 1년적용			
제공기관	●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(지정·등록제) ● (대표자 및 관리자)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- 사회복지사, 또는 의료인, 또는 영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-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			
제공인력	● <슈퍼바이저>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) 건강운동관리사로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나)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관련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※ 체육학 전공 : 다음 3개 과목(기능해부학, 운동손상평가 및 재활, 운동처방) 이수한 자를 관련 전공자로 인정	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&lt;제공인력&gt;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) 건강운동관리사</li> <li>나)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</li> <li>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</li> <li>③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※ 체육학 전공 : 다음 3개 과목(기능해부학, 운동손상평가 및 재활, 운동처방) 이수한 자를 관련 전공자로 인정</li> <li>다) 스포츠지도사(전문 생활장애인노인스포츠지도사 포함)로 민간자격증(노인운동사, 퍼스널트레이너) 취득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노인운동사, 퍼스널트레이너 : '제공인력 양성과정'(전북사회서비스원과 전북스포츠의학연구회 협업)을 통해 개발된 민간자격</li> </ul> </li> <li>라) 민간자격증(노인운동사, 퍼스널트레이너) 취득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노인운동사, 퍼스널트레이너 : '제공인력 양성과정'(전북사회서비스원과 전북스포츠의학연구회 협업)을 통해 개발된 민간자격</li> <li>※ '24.6.30.이전 채용된 노인운동관련 제공인력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개설한 제공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 취득시 변경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<p>가격산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서비스 가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84 792 1453 1050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서비스가격(월)</th> <th colspan="3">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</th> </tr> <tr> <th>소득수준</th> <th>본인부담금</th> <th>정부지원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200,000원</td> <td>수급자, 차상위</td> <td>(5%) 10,000원</td> <td>190,000원</td> </tr> <tr> <td>120% 이하</td> <td>(15%) 30,000원</td> <td>170,000원</td> </tr> <tr> <td>120~160%</td> <td>(30%) 60,000원</td> <td>140,000원</td> </tr> <tr> <td>160% 초과</td> <td>(100%) 200,000원</td> <td>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서비스가격(월)	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			소득수준	본인부담금	정부지원금	200,000원	수급자, 차상위	(5%) 10,000원	190,000원	120% 이하	(15%) 30,000원	170,000원	120~160%	(30%) 60,000원	140,000원	160% 초과	(100%) 200,000원	0원
서비스가격(월)	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																				
	소득수준	본인부담금	정부지원금																		
200,000원	수급자, 차상위	(5%) 10,000원	190,000원																		
	120% 이하	(15%) 30,000원	170,000원																		
	120~160%	(30%) 60,000원	140,000원																		
	160% 초과	(100%) 200,000원	0원																		
<p>제공절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서비스 제공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단계 : 등록, 상담, 욕구판정</li> <li>- 2단계 : 측정(기초의학검사 및 건강 체력 측정/평가, 통증치 검사 분석)</li> <li>- 3단계 :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계획 수립</li> <li>- 4단계 : 개인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(공통, 개인별) 실시</li> <li>- 5단계 :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</li> <li>- 6단계 : 사후관리 (종료시 신체기능 검사 의무 실시,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)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<p>안전관리 기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안전관리 계획수립(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)</li> <li>● 제공인력(연 2회)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</li> <li>● (기관방문형 보험가입) 기관 화재보험, 이용자배상책임보험,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</li> <li>●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<p>기타 유의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전·사후 검사 : ① 사전검사 : 서비스 시작 전 실시, ② 사후검사 : 종료 월 실시</li> <li>●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·보고 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삶의 질 척도, SFT(Senior Fitness Test)척도 사전·사후 검사 대비 10% 향상</li> </ul> </li> <li>● 건강상태 점검 회수 준수(연3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체 이용자 대상 체성분 검사, 기초체력 측정하고 전문가 상담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</li> </ul> </li> <li>● 집단규모 : 제공인력 1명당 6~10명 이내 이용자 가능</li> <li>● 제공방식 : 기관방문형</li> <li>●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, 장소, 주요 내용, 제공인력, 이용자 서명, 특이사항 등을 기록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
**6 【520113】 전북힐링지원 서비스**

구분	내용										
시행 시군	● 전 시군										
사업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농촌 치유자원 활용으로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하여 심리적 건강성 증진, 문제 예방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촉진</li> <li>● 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가족과 함께하는 쉼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와 일상회복, 가족관계 증진</li> </ul>										
신청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소득 및 연령기준 : 소득기준 없음, 만9세~만64세 이하(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)</li> <li>● 욕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중복이용 제한 : 전북청년농촌치유프로그램(자연스러운힐링스테이)(행복이음 확인)</li> <li>- 서비스이용을 원하는 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
	① (돌봄필요청·중장년) 만19세~만64세로 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나 돌봄자가 부재한 경우,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										
	② (가족돌봄청년) 만9세~만39세로 질병, 장애,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										
	③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50%;">욕구기준(이하 항목 중 택 1)</th> <th style="width:50%;">제출서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- BMI가 23kg/m<sup>2</sup> 이상이거나 18.5kg/m<sup>2</sup> 미만인 경우</td> <td>&lt;이하 항목 중 택 1&gt; ①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② 인바디 측정지</td> </tr> <tr> <td>- 허리둘레가 남자 90cm,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</td> <td>- 허리둘레 확인 가능한 측정지</td> </tr> <tr> <td>-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자(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 중 하나)</td> <td>-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진료확인서, 처방전 등 진단코드가 확인되는 서류 가능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욕구기준(이하 항목 중 택 1)	제출서류	- BMI가 23kg/m <sup>2</sup> 이상이거나 18.5kg/m <sup>2</sup> 미만인 경우	<이하 항목 중 택 1> ①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② 인바디 측정지	- 허리둘레가 남자 90cm,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	- 허리둘레 확인 가능한 측정지	-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자(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 중 하나)	-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진료확인서, 처방전 등 진단코드가 확인되는 서류 가능)	
욕구기준(이하 항목 중 택 1)	제출서류										
- BMI가 23kg/m <sup>2</sup> 이상이거나 18.5kg/m <sup>2</sup> 미만인 경우	<이하 항목 중 택 1> ①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② 인바디 측정지										
- 허리둘레가 남자 90cm,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	- 허리둘레 확인 가능한 측정지										
-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자(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 중 하나)	-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진료확인서, 처방전 등 진단코드가 확인되는 서류 가능)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우선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만9세~만39세의 경우) 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(만19세~만64세의 경우) 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,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자립이 어려우며(고립운동 포함)돌봄자가 부재한 경우,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</li> <li>2. 공공 또는 민간 전달체계 추천자</li> <li>3. 한부모가구</li> </ol> </li> </ul>											
서비스 대상자	① 돌봄 필요 청·중장년 신청자, 또는 {신청자+가족(연령 무관)} ② 가족돌봄청년 신청자, 또는 {신청자+가족(연령 무관)}										
내용 및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서비스 내용 : 월 4회</li> </ul>										
	구분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회당 시간							
기본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체건강 프로그램 : 이야기가 있는 힐링 산책, 트레킹, 노르딕 워킹, 요가, 생활체조 등 자연에서 즐기는 운동 프로그램</li> <li>- 마음건강 프로그램 : 원예활동(텃밭가꾸기, 반려식물 심기, 스트레스 완화 식물 체험, 화환 만들기 등), 차(차 만들기, 다도), 동물(곤충) 매개치유, 공예(도예, 목공, 자연 모빌, 유리공예, 천연염색 등), 명상(죽육, 풍육 등), 사진활동1</li> <li>-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푸드테라피</li> <li>- 농산물 등 식재료와 관련된 건강 증진 교육(계절 농특산물 효능), 마을 계절재료 활용 힐링음식 만들기(건강밥상 또는 다과), 푸드아트 테파리(건강음료, 쿠키, 샐러드, 밀반찬 등 제철음식 으로 간단한 추억음식 만들기), 치유 피크닉 등</li> </ul>		월 4회	3시간							
제공기간	● 6개월 (재판정 없음)										

<p>제공기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(지정·등록제)</li> <li>(대표자 및 관리자)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복지사, 또는 의료인,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</li> <li>-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공인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서비스 영역과 제공인력 자격기준이 일치해야 함</li> <li>가) 농촌진흥청 발급 치유농업사 1~2급</li> <li>나) 사회적 농장 프로그램 강사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농업 교육과정(17시간 이상)수료자</li> <li>다) 농장체험 관련 자격증* 소지자로 농장체험활동 강사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* 전문자격(국가자격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84 813 1460 1122"> <tr> <td data-bbox="284 813 592 1021"> <p>전문자격(국가자격)</p> </td> <td data-bbox="592 813 1460 1021"> <p>·보건교육사,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, 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등산지도사), 산림치유지도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정교사, 재활승마지도사, 말 조련사, 의사, 한의사, 간호사, 약사, 한약사, 수의사, 청소년상담사, 장애인재활상담사, 도시농업관리사, 동물보건사, 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, 보건교사, 평생교육사, 나무의사</p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284 1021 592 1122"> <p>기술자격(기능사, 산업기사, 기사, 기술사)</p> </td> <td data-bbox="592 1021 1460 1122"> <p>조경, 원예, 종자, 유기농업, 축산, 산림, 화훼장식, 임업종묘, 식물보호, 시설원예, 농화학, 종자축산</p> </td> </tr> </table> <p>라) 농업인이면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치유농업 운영자교육(150시간 이상) 수료자</p>				<p>전문자격(국가자격)</p>	<p>·보건교육사,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, 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등산지도사), 산림치유지도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정교사, 재활승마지도사, 말 조련사, 의사, 한의사, 간호사, 약사, 한약사, 수의사, 청소년상담사, 장애인재활상담사, 도시농업관리사, 동물보건사, 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, 보건교사, 평생교육사, 나무의사</p>	<p>기술자격(기능사, 산업기사, 기사, 기술사)</p>	<p>조경, 원예, 종자, 유기농업, 축산, 산림, 화훼장식, 임업종묘, 식물보호, 시설원예, 농화학, 종자축산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전문자격(국가자격)</p>	<p>·보건교육사,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, 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등산지도사), 산림치유지도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정교사, 재활승마지도사, 말 조련사, 의사, 한의사, 간호사, 약사, 한약사, 수의사, 청소년상담사, 장애인재활상담사, 도시농업관리사, 동물보건사, 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, 보건교사, 평생교육사, 나무의사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기술자격(기능사, 산업기사, 기사, 기술사)</p>	<p>조경, 원예, 종자, 유기농업, 축산, 산림, 화훼장식, 임업종묘, 식물보호, 시설원예, 농화학, 종자축산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가격산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회당 서비스 기준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84 1339 1460 1574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회당 이용시간</th> <th rowspan="2">회당 가격</th> <th rowspan="2">월별 횟수</th> <th colspan="2">대상자 이외에 추가 이용</th> </tr> <tr> <th>대상자 외 가족 1인 추가(2인) 이용</th> <th>대상자 외 가족 2인 이상 추가(3인 이상) 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시간</td> <td>50,000원</td> <td>4회</td> <td>100,000원 (월 2회)</td> <td>추가 1인당 대상자 부담 30,000원 * 3인 예시) 100,000원+30,000원=130,000원 (월 2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비스 가격</li> <li>※ 본인부담 경감필요 가족돌봄 청(소)년 본인부담률 5%p 할인('26.3월 부터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84 1671 1445 1989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서비스가격(월)</th> <th colspan="3">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</th> </tr> <tr> <th>소득수준</th> <th>본인부담금</th> <th>정부지원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5">200,000원</td> <td>수급자, 차상위</td> <td>(5%) 10,000원</td> <td>190,000원</td> </tr> <tr> <td>120% 이하</td> <td>(15%) 30,000원</td> <td>170,000원</td> </tr> <tr> <td>120~160%</td> <td>(30%) 60,000원</td> <td>140,000원</td> </tr> <tr> <td>160% 초과</td> <td>(100%) 200,000원</td> <td>0원</td> </tr> <tr> <td>자립준비청년, 보호종료아동</td> <td>면제</td> <td>20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회당 이용시간	회당 가격	월별 횟수	대상자 이외에 추가 이용		대상자 외 가족 1인 추가(2인) 이용	대상자 외 가족 2인 이상 추가(3인 이상) 이용	3시간	50,000원	4회	100,000원 (월 2회)	추가 1인당 대상자 부담 30,000원 * 3인 예시) 100,000원+30,000원=130,000원 (월 2회)	서비스가격(월)	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			소득수준	본인부담금	정부지원금	200,000원	수급자, 차상위	(5%) 10,000원	190,000원	120% 이하	(15%) 30,000원	170,000원	120~160%	(30%) 60,000원	140,000원	160% 초과	(100%) 200,000원	0원	자립준비청년, 보호종료아동	면제	200,000원
회당 이용시간	회당 가격	월별 횟수	대상자 이외에 추가 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대상자 외 가족 1인 추가(2인) 이용	대상자 외 가족 2인 이상 추가(3인 이상) 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시간	50,000원	4회	100,000원 (월 2회)	추가 1인당 대상자 부담 30,000원 * 3인 예시) 100,000원+30,000원=130,000원 (월 2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비스가격(월)	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소득수준	본인부담금	정부지원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,000원	수급자, 차상위	(5%) 10,000원	19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20% 이하	(15%) 30,000원	17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20~160%	(30%) 60,000원	14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60% 초과	(100%) 200,000원	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립준비청년, 보호종료아동	면제	2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공절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비스 제공절차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단계 : 등록, 상담, 욕구과약, 사전검사</li> <li>- 2단계 :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</li> <li>- 3단계 : 서비스제공</li> <li>- 4단계 : 사후검사, 피드백 제공 및 종결</li> </ul>
안전관리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안전관리 계획수립(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)</li> <li>● 제공인력(연 2회)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</li> <li>● (기관방문형 보험가입) 기관 화재보험, 이용자배상책임보험,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</li> <li>●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</li> <li>●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</li> </ul>
기타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전·사후 검사 : ① 사전검사 : 서비스 시작 전 실시, ② 사후검사 : 종료 월 실시</li> <li>●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·보고 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지각된 스트레스 척도(PSS척도) 사전·사후 대비 10% 향상</b></li> </ul> </li> <li>● 집단규모 : 제공인력 1명당 6명~10명 이내 이용자 가능</li> <li>● 제공방식 : 기관방문형</li> <li>●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, 장소, 주요 내용, 제공인력, 이용자 서명, 특이사항 등을 기록</li> </ul> </li> </ul>

**7 【520213】 전북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**

구 분	내 용										
시행 시군	• 전 시군										
사업목적	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, 일상생활의 자기돌봄 역량 강화										
신청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득 및 연령기준 : 소득기준 없음, 만9세~만39세 이하(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)</li> <li>• 욕구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중복이용 제한 :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(행복이음 확인)</li> <li>- 서비스이용을 원하는 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li> </ul> </li> </ul> <p>① (돌봄필요청·중장년) 만19세~만64세로 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나 돌봄자가 부재한 경우,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</p> <p>② (가족돌봄청년) 만9세~만39세로 질병, 장애,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</p> <p>③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</p>										
	욕구기준(이하 항목 중 택 1)	제출서류									
	- BMI가 23kg/m <sup>2</sup> 이상이거나 18.5kg/m <sup>2</sup> 미만인 경우	<이하 항목 중 택 1> ①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② 인바디 측정지									
	- 허리둘레가 남자 90cm,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	- 허리둘레 확인 가능한 측정지									
	-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자(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 중 하나)	-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진료확인서, 처방전 등 진단코드가 확인되는 서류 가능)									
서비스 대상자	① 돌봄 필요 청·중장년 신청자, ② 가족돌봄청년 신청자										
내용 및 구성	• 서비스 내용 : 월 12회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서비스 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서비스 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본서비스</td> <td>           ① 신체건강 프로그램 : 유산소, 근력향상,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          ②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          ③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(월 1회)         </td> <td>           ① 1:3 월12회 (회당 70분)            ② 1:4 월12회 (회당 90분)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부가서비스</td> <td>자세·체형교정(거북목, 라운드숄더, 척추·골반 이상 등) 운동</td> <td>서비스 기간 중 1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기본서비스	① 신체건강 프로그램 : 유산소, 근력향상,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②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③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(월 1회)	① 1:3 월12회 (회당 70분) ② 1:4 월12회 (회당 90분)	부가서비스	자세·체형교정(거북목, 라운드숄더, 척추·골반 이상 등) 운동	서비스 기간 중 1회	
	구분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							
기본서비스	① 신체건강 프로그램 : 유산소, 근력향상,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②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③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(월 1회)	① 1:3 월12회 (회당 70분) ② 1:4 월12회 (회당 90분)									
부가서비스	자세·체형교정(거북목, 라운드숄더, 척추·골반 이상 등) 운동	서비스 기간 중 1회									
부가서비스	서비스 기간 중 1회										

제공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년 (재판정 1회, 최대 2년까지 가능) * '25년 선정 이용자는 6개월 유지 '26년부터 1년적용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
제공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(지정·등록제)</li> <li>※ 청년 대상 서비스 지원 경험이 있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, 청년센터,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기관 참여 권장</li> <li>• (대표자 및 관리자)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복지사, 또는 의료인,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</li> <li>-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
제공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</li> <li>가) 생활스포츠지도사, 전문스포츠지도사, 다만,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</li> <li>나)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</li> <li>② 학사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</li> <li>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</li> </o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
가격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서비스 가격</li> <li>※ 본인부담 경감필요 가족돌봄 청(소)년 본인부담률 5%p 할인('26.3월 부터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바우처 총액 (월)</th> <th colspan="3">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</th> </tr> <tr> <th>소득수준</th> <th>본인부담금</th> <th>정부지원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5">240,000원</td> <td>수급자, 차상위</td> <td>(5%) 12,000원</td> <td>228,000원</td> </tr> <tr> <td>120% 이하</td> <td>(15%) 36,000원</td> <td>204,000원</td> </tr> <tr> <td>120~160%</td> <td>(30%) 72,000원</td> <td>168,000원</td> </tr> <tr> <td>160% 초과</td> <td>(100%) 240,000원</td> <td>0원</td> </tr> <tr> <td>자립준비청년, 보호종료아동</td> <td>면제</td> <td>24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바우처 총액 (월)	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			소득수준	본인부담금	정부지원금	240,000원	수급자, 차상위	(5%) 12,000원	228,000원	120% 이하	(15%) 36,000원	204,000원	120~160%	(30%) 72,000원	168,000원	160% 초과	(100%) 240,000원	0원	자립준비청년, 보호종료아동	면제	240,000원
바우처 총액 (월)	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																							
	소득수준	본인부담금	정부지원금																					
240,000원	수급자, 차상위	(5%) 12,000원	228,000원																					
	120% 이하	(15%) 36,000원	204,000원																					
	120~160%	(30%) 72,000원	168,000원																					
	160% 초과	(100%) 240,000원	0원																					
	자립준비청년, 보호종료아동	면제	240,000원																					
제공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서비스 제공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단계 : 등록, 상담, 욕구과약</li> <li>- 2단계 :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/평가(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)</li> <li>- 3단계 :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</li> <li>- 4단계 :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</li> <li>- 5단계 : 사후관리(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)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
안전관리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안전관리 계획수립(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)</li> <li>• 제공인력(연 2회)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</li> <li>• (기관방문형 보험가입) 기관 화재보험, 이용자배상책임보험,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</li> <li>•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</li> <li>•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전·사후 검사 : ① 사전검사 : 서비스 시작 전 실시, ② 사후검사 : 종료 월 실시</li> <li>•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·보고 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바디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사전·사후 대비 3% 향상</li> </ul> </li> <li>• 제공방식 : 기관방문형</li> <li>•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, 장소, 주요 내용, 제공인력, 이용자 서명, 특이사항 등을 기록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